

뉴질랜드 장로회 가입 신청

머리말

2010년도 뉴질랜드 장로회 연차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타 교단 소속 목사에 대한 가입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사역자 자문 서비스(Parish and People Advisory Servic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 문서의 끝에 나오는 연락처 참조).

1단계

가입 신청인은 다음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he Parish and People Advisory Service
Assembly Office
PO Box 9049
Wellington 6141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안수 증명서
- 뉴질랜드 장로회 교구 멤버십 확인서(또는 면제 승인서 - 아래 참조)
- 최근 12개월의 기간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서
- 외국인 신청인은 뉴질랜드 취업 자격을 입증하는 문서
- 성적 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
-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
- 추천인 리스트
- 사역 소명에 대한 답변서(신청서의 별첨 4)

첨부서류가 미비된 신청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를 근거로 신청인의 자격 및 신학 이해도가 뉴질랜드 장로회의 소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자격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멤버십 요건

2010년 10월부터 뉴질랜드 내 신청인은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12개월 연속으로 뉴질랜드 장로회의 지역 교구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의 목사는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12개월간(비연속 무방) 뉴질랜드 장로회의 지역 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 요건에서 말하는 지역 교구는 뉴질랜드 장로회가 파트너로 되어 있는 협력 선교 교구를 포함합니다.

이 요건에 대한 면제 신청은 지도자 분과 위원회(Leadership Subcommittee) 앞으로 하면 됩니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확인서를 받아 가입 신청서와 함께 교구 사역자 자문 서비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Beneficiary Fund)

전국 안수나 지역 안수를 받은 뉴질랜드 장로회 목사는 소정의 면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위에 언급된 뉴질랜드 장로회의 요건을 충족하면 두 번째 심사 단계로 올라갑니다.

2단계

신청인은 인성검사, 교단 사무국(Personnel Work Group)의 인터뷰 및 추천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성검사는 서면 테스트에 이어 장로회가 지정한 심리학자의 인터뷰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리 인터뷰에 관련된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 모든 인성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인성검사에 이어 신청인은 사무국이 임명한 위원회로부터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이 인터뷰를 위한 제반 비용 역시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사무국에서는 확인 작업을 위해 신청인의 추천인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인터뷰 장소와 인성검사비 등 제 2단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구 사역자 자문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뉴질랜드 장로회 교구로부터 이미 청빙을 받아 소정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인은 제 3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 4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 밖의 모든 신청인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장로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절차는 목회 지원부, 노회 및 총회에 확인해 목사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장로회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신청인은 제 4단계로 올라갑니다.

4 단계

지금까지 단계에서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사무국에서 수습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수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신청인은 뉴질랜드 장로회의 목사로 정식 등록되며 장로회 목회 사역을 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락처

Juliette Bowater, Parish and People Advisory Service

전화 (04) 801-6000

휴대폰 027 222 8302

이메일 juliette@presbyterian.org.nz

주소 Assembly Office, PO Box 9049, Wellington 6141